

업 무 현 황

2016. 08. 12.



근로복지공단

재활공학연구소

Korea Orthopedics & Rehabilitation Engineering Center

I 일반 현황

1 인력 현황

○ 정원 45명, 현원 71명 (정규직 45명, 비정규직 26명)

[2016. 08. 12. 현재]

(단위 : 명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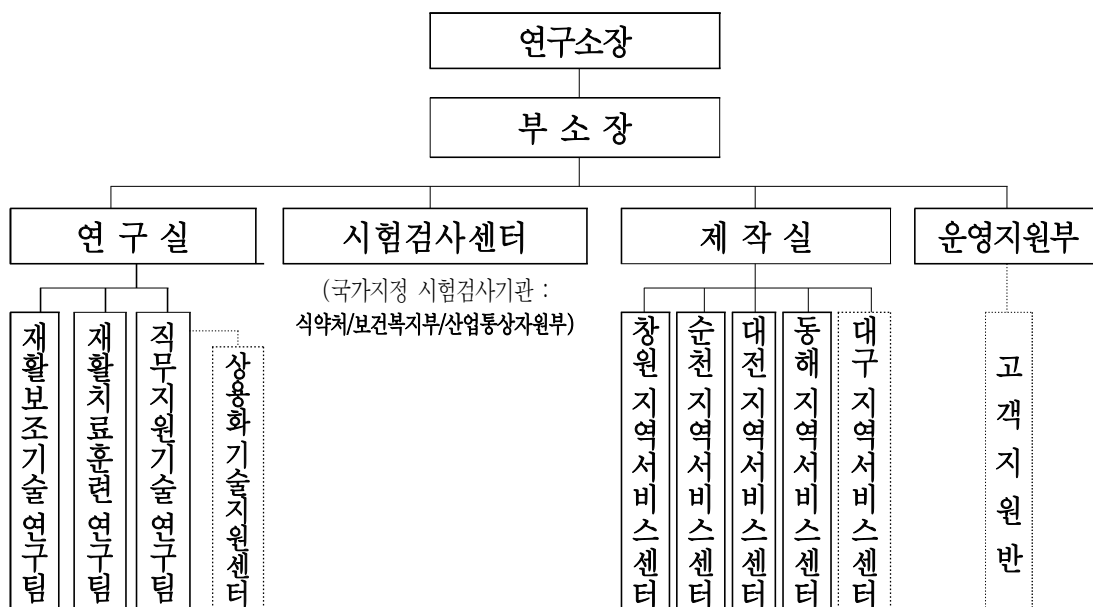
구분	정 규 직															특정업무직(※)			
	합계	기관장	연구직			의사직	전문직 (의자·보조기)			기술직	일반직				기능직	합계	자체계약		외부
			소계	연구위원	책임		소계	3급	4~6급		소계	2급	3급	4~6급			무기계약	기간제	
정원	45	1	19	7	12	1	16	1	15	2	6	1	1	4	-	10	8	2	-
현원	45	1	19	7	12	-	16	1	15	2	6	1	1	4	1	26	8	2	16
과부족	-	-	-	-	-	△1	-	-	-	-	-	-	-	-	1	-	-	-	-

※ 특정업무직(무기,기간제) 현원(10명) : 연구지원직 6, 전문지원직(의자·보조기) 3, 기술지원직 1

※ 위촉연구원(16명) : 외부(국책) 연구과제 수행을 위한 연구원 (산자부 등 타부처에서 인건비 지원)

2 조 직 도

○ 연구실 등 4개 부서 (3개 연구팀, 5개 지역서비스센터)



Ⅱ 사업 추진 현황

○ 주요 사업실적

['16. 7. 31. 현재]

실행 과제	성 과 지 표	'15년 실적	'16년 목표 (A)	'16년 실적 (B)	달성율 (B/A)	지 표 별
① 고기능 첨단 재활 보조기구 연구·개발 및 상용화	수행 연구과제	54건	52건	50건	96.2%	경영평가
	연구성과물 상용화 실적	12건	13건	13건	100%	중기재활
② 요양급여 재활 보조기구 공급 확대	재활보조기구 공급 실적	11,403건	11,200건	6,057건	54.1%	경영평가
③ 직업재활 직무 지원보조기구 지원	직무지원형 보조기구 지원 실적	202명	250명	129명	51.6%	경영평가 및 중기재활
④ 선진 과학적 재활적응훈련기법 연구	재활적응훈련 (ATAD) 운영 실적	1,529건	1,070건	868건	81.1%	중기재활
⑤ 절단·마비 산재 장애인 재활적응 훈련 프로그램 운영	건강증진프로그램 운영 실적	1,586건	1,470건	1,245건	84.7%	중기재활

1 장애인 등 보조기기 지원법(※) 제정 관련 보고

※ 관련법률 : [별첨 자료]

『장애인·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』
[시행 2016.12.30.], [법률 제13662호, 2015.12.29. 제정]

▣ 법률 제정 관련 경과 및 현황 보고

- 동 법률의 핵심은 “보건복지부 주도로 보조기기 지원 체계를 확립”하려는 내용으로, 과거 3차례에 걸쳐 입법이 추진되었으나 부처간 협의과정에서 고용노동부, 보건처 등의 반대로 제정되지 못하였음.
- 그러나 2015년 12월 29일 법률 제정이 이루어져 현재 보건복지부에서는 시행령을 마련중이며, 8월 현재 국립재활원에 중앙보조기기 센터 설치, 인력채용 및 장비 확보가 진행 중임.

▣ 『장애인등 보조기기 지원에 관한 법률』 내용 (요약)

◇ 제정이유

- 고령화 등 장애인구의 증가로 보조기구 수요가 늘어나고 있음에도, 보조기기 지원/서비스 체계가 미비하고 품질관리도 허술한 실정임.
- 이에 관련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장애인 등이 보조기기를 편리하게 이용하도록 보조기기 제공 및 서비스를 보편화하고, 관련 기술을 개발하여 장애인 등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이바지하려함.

◇ 주요내용

가. 이 법의 목적, 적용범위 및 "보조기기" 용어를 정의함(제1~6조).

- 「장애인복지법」 제2조, 「노인장기요양보험법」 제2조제1호,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4조에 따른 범위 등

나. 보건복지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마다 보조기기 지원과 활용촉진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함(제6조).

다.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기기의 교부·대여·사레관리, 보조기기 관련 정보의 제공 등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 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(제7조).

라. 보건복지부장관은 보조기기 관련 연구 및 개발 등을 포함한 보조기기 연구·개발 및 보급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중앙보조기기센터를 설치·운영하도록 하고, 시·도지사는 지역보조기기센터를 설치·운영할 수 있도록 함(제13조 및 제14조).

◇ 재 활용공학연구소와 기능중복 관련 내용(요약)

○ 중앙보조기기센터 설치·운영

- 보건복지부장관은 보조기기의 지원과 활용촉진 등에 필요한 사업수행을 위하여 공공기관(※)에 중앙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음
-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중앙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

※ 중앙보조기기센터는 국립재활원에 설치

[국립재활원 및 부설 재활연구소 현황 : 별도 첨부]

○ 지역보조기기센터 설치·운영

- 시·도지사는 관할 구역내_지역보조기기센터를 설치·운영하고, 소요

되는 예산은 시장·군수·구청장에게 공동 부담하며, 지역센터는 필요시 공공기관 또는 비영리법인에 위탁 운영할 수 있음

※ 지역보조기기센터 현황 : 2016년 현재 11개소 설치 → 2020년까지 24개소로 확대

■ 대응 방안

- 법 시행으로 보건복지부-국립재활원-건강보험공단에서 추진되는 사항이 근로복지공단 재활공학연구소의 기능과 완전히 중복되고 있어, 향후 연구소 위상 및 운영에 상당한 영향이 있을 것으로 예상됨 ⇒ 본부 및 고용노동부 보고 및 대응방안 수립 예정

2 2015년 환노위 결산국회 시정 요구사항 반영

■ 사업성과지표 설정 요구 관련

- 연구·개발의 최종적인 성과를 알 수 있는 지표가 제시되어 있지 않아, 체계적인 성과평가가 어려운 점을 개선 요구함에 따라,
- 타 기관의 사례를 참고, 연구·개발사업에 대한 특허, 기술이전 건수 등 측정가능한 성과지표를 설정하여 성과평가를 체계화하려함.

■ 자체수입 확대가 필요하다는 요구

- 연구소의 사업비는 출연금과 자체수입으로 구성되고 자체수익이 부족하여 예산집행이 부진하므로, 자체수입 확대가 필요하다고 요구
- 그러나 이는 ‘연구소 기능·역할 재정립’ 차원의 자체연구 및 산재보험시설 기능강화로 인한 것으로, 자체수익 감소가 산업재해보상기금의 증가의 원인은 아님.
- 연구 성과물의 상용화 및 급여화 추진을 확대하고, 동시에 자체수익 증대를 통한 수지차 개선에 적극 노력하겠음.